



시보는 광양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	기관의 장
람	

제28호(호외) 2021. 7. 20.(화)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1-1412호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 입법예고 1

광양시 공고 제2021-1413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

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1944, 행정 1945)

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19일

광 양 시 장

1. 조 례 명 :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2. 개정이유

-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이용시설로 이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 편익 중심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 및 조례 일부 오류 사항을 정정

3. 주요내용

-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주소로 정정(제2조제2항)
-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 이용료 반환기준 변경(제12조제2항)
 - 〔별표3〕 이용자 편익으로 개정
- 인용 조문 오류 정정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기간 : 2021. 7. 19. ~ 2021. 8. 8.(20일간)

6. 의견 제출

-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(참조 : 교육보육과, 전화 : 061-797-2965, FAX : 061-797-2982, E-mail : leejeun@korea.kr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.
 2.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
 1부. 끝.

【붙임1】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【붙임2】

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중동 1747-1”을 “중동로 108”로 한다.

별표 1 제목 중 “(제12조제1항 관련)”을 “(제11조제1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목 중 “(제12조제2항 관련)”을 “(제11조제2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센터 이용료 반환 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

구 분		반 환 금 액
-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		납부한 이용료 전액
-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	이용일 전	납부한 이용료 전액
	이용일 이후	납부한 이용료전액에서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
제2조(설치 등) ① (생략) ② 센터는 광양시 <u>중동 1747-1</u>에 둔다. ③ (생략) [별표 1]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기준(<u>제12조제1항</u> 관련) [별표 2] 광양시 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 (<u>제12조제2항</u> 관련) [별표 3] 광양시 센터 이용료 반환 기준 (<u>제13조</u> 관련)	제2조(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중동로 108</u>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[별표 1]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기준(<u>제11조제1항</u> 관련) [별표 2] 광양시 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 (<u>제11조제2항</u> 관련) [별표 3] 광양시 센터 이용료 반환 기준 (<u>제12조제1항</u>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구</th><th>분</th><th>반 환 금 액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-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</td><td>납부한 이용료 전액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-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</td><td>이용일 전</td><td>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</td></tr><tr><td>이용일 이후</td><td>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과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</td></tr></table>	구	분	반 환 금 액	-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		납부한 이용료 전액	-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	이용일 전	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	이용일 이후	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과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	<table><tr><th>구</th><th>분</th><th>반 환 금 액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-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</td><td>납부한 이용료 전액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-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</td><td>이용일 전</td><td>납부한 이용료 전액</td></tr><tr><td>이용일 이후</td><td>납부한 이용료 전액에서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</td></tr></table>	구	분	반 환 금 액	-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		납부한 이용료 전액	-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	이용일 전	납부한 이용료 전액	이용일 이후	납부한 이용료 전액에서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
구	분	반 환 금 액																					
-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		납부한 이용료 전액																					
-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	이용일 전	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
	이용일 이후	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과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
구	분	반 환 금 액																					
-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		납부한 이용료 전액																					
-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	이용일 전	납부한 이용료 전액																					
	이용일 이후	납부한 이용료 전액에서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

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19일

광 양 시 장

1. 조 례 명 :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 조례

2. 개정이유

- (재)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·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광양시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밖의 보육 사각지대 사업 추진
- 2021년 市 출연금 시기 종료로 광양시의 선진 보육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 출연금 계속 지원 필요

3. 주요내용

-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“출연법” 을 「지방자치단체 출자

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같이 약칭을 “지방출자출연법”으로 변경(제7조제1항, 제11조, 제12조)

- (재)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(제14조제1항)
 - “재단을 설립한 년도부터 5년간 매년 5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”를 “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변경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기간 : 2021. 7. 19. ~ 2021. 8. 8.(20일간)

6. 의견 제출

-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(참조 : 교육보육과, 전화 : 061-797-2965, FAX : 061-797-2592, E-mail : leejeun@korea.kr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-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.
 2.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1부. 끝.

【붙임1】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【붙임2】

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“출연법””을 ““지방출자출연법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출연법”을 “지방출자출연법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출연법”을 “지방출자출연법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출연법”을 “지방출자출연법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재단을 설립한 년도부터 5년간 매년 5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”를 “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조금”을 “출연금 또는 보조금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전단 중 “출연법”을 “지방출자출연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「지 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출 연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 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7 조제2항 및 <u>출연법</u> 제8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	제7조(정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“지방출자출연법”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 <u>지방출자출연법</u> ----- -----.
제11조(예산 보고) 재단은 회계연 도마다 성립되거나 변경되는 예 산을 <u>출연법</u> 제18조제2항에 따 라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해 당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	제11조(예산 보고) ----- ----- <u>지방출자출연법</u> ----- ----- -----.
제12조(결산서 제출) 재단은 회계 연도마다 작성한 결산서를 <u>출연 법</u> 제19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 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갖추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	제12조(결산서 제출) ----- ----- <u>지방출자 출연법</u> ----- ----- ----.
제14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재단	제14조(재정지원) ① -----

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
재단을 설립한 년도부터 5년간
매년 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한
다.

-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시장에
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
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
법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장의
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지도·감독 등 결과처리)

-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출연
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
도·감독 또는 확인·검사결과
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
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
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
다.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
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조치
에 따라야 한다.

- ② (생략)

----- 매
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
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
수 있다.

- ② -----
출연금 또는 보조금-----

---.

제17조(지도·감독 등 결과처리)

- ① ----- 지방출자
출연법-----

-----.

- ② (현행과 같음)